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포함)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파주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
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파 주 시 장

I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6월 10일(금)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지급
(소상공인) 소상공인(1개의 사업장에 한함)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 지급

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중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 ‘19~‘21년도 매출액 신고자료가 있는 소상공인(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자 신청 가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만족할 것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무관
’22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 이하			
① ‘21년, ‘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체 ② ‘21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 ①②매출 감소 간주 지원			
‘21년, ’22년 매출액 3억 초과 ~ 10억 이하 ※ 감소판단기준(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매출액 감소자
창업시기	기준년도	비교년도	
~ ‘19년 창업자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	
‘20년 창업자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	
‘21년 창업자	2021년 매출	2022년 매출	
‘22년 창업자	2022년 1,2월 매출	2022년 3,4월 매출	

* 매출액은 월평균을 연으로 환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 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받은시설

(특수형태근로자)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50만원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일부 직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 자(특고)
 -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 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프리랜서)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정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 : 50만원 지급

※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법인·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 포함] 운수종사자)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50만원 지급
- 견습기간,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스템상 재직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최대 15일), 이직에 소요된 기간(최대 7일)을 계속해서 재직중인 것으로 간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제1호,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종교시설 대표자)

- 공고일(4. 20.)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 50만원 지급

3 제외대상

-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1년 및 '22년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단, '21년·'2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 없는 자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 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 ⑦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 ⑧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 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등 '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제외
- ⑩ 지원 대상별 불문하고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인에게 한번만 지원

II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6월 10일(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만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 소상공인(<https://han.gl/IOGrP>)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https://han.gl/fJrip>) 종교시설 대표자(<https://han.gl/hcMGI>)
 -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음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 개인택시 : 택시조합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법인택시 : 각 택시 회사에 및 구비서류 신청서 제출
 - (버스운수종사자 지원금 신청)
 - 시내(마을)버스 : 각 시내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전세버스 : 각 전세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종교시설 대표자 지원금 신청)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시스템(<https://han.gl/hcMGI>)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소상공인)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⑤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2021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2021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2021년 자료)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19년~2021년 자료)
⑦	2021년, 2022년 창업자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화면 캡처,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 제출)		
⑨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 제출서류(소상공인 외)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수종사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는 제외)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⑤ 프리랜서	-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 프리랜서 확인 서류 (노무제공확인서, 용역계약서, 취(촉)탁서 등)
⑥ 법인·개인택시, 버스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 -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파주시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⑦ 종교시설 대표자	-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 제출)	
⑨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 매출액 감소여부 계산방법

2021년 창업자 : 2021년 · 2022년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비교 산출식) - (창업 월 ~ 2021년 12월까지 매출액 합계) ÷ 해당 개월수 × 12개월
 - (2022년 1월 ~ 4월까지 매출액 합계) ÷ 해당 개월수 × 12개월

(예) 2021년 4월 창업자

- 2021년 4월 ~ 12월 9개월간 매출액 합계 9천만원 일 경우(월평균 매출액 1,000만원 × 12개월 = 1억 2천만원)
- 2022년 1월 ~ 4월 4개월간 매출액 합계 3천만원 일 경우(월평균 매출액 750만원 × 12개월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9천만원 = 3천만원 매출액 감소로 지원

○ 제출서류 발급방법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무인민원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https://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온라인 서류발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텍스 ☎ 126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2-3215-2674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처리절차

읍·면·동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신청 · 접수		심사 · 검토		생활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대중교통과		문화예술과		
신청 · 접수 · 생활안정자금 지급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신청 · 접수 · 생활안정자금 지급 (종교시설 대표자)		

-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 심사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
- 신청인이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지급 : 계좌입금

3 지급중지 및 환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함
- 부정확한 정보기입,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3 안내 문의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파주시 대중교통과 ☎ 031-940-5761(시내버스), 031-940-5296(마을버스)
☎ 031-940-5291(택 시), 031-940-5782(전세버스)

- 파주시 문화예술과 ☎ 031-940-5832(종교시설)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표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확인방법

- 1) 사업자등록증명에 나와 있는 내 업종명과 비교하여 확인
-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지역(예:고양지사)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업종번호 조회한 후 확인

* 통계분류 포털 홈페이지([클릭](#))에서 표준산업분류표 전체를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신분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3.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4.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2021·2022년 매출액 3~10억 이하 만 작성

창업시기	기준년도	비교년도
~ 2019년도 창업자	2019년 매출 또는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
2020년도 창업자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
2021년도 창업자	2021년 매출	2022년 매출
2022년도 창업자	2022년 1,2월 매출	2022년 3,4월 매출

5.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지원금 부정수급 약약서

[별지 제3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③ 주 소:				
④ 연락처:				
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재직증명서 등) 2. 신분증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약속서 1부 5.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별지 제8호서식] 프리랜서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신설 2021.3.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프리랜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프리랜서 직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프리랜서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긴급생활안정고용지원금 지급 확인서류 1부(통장입금내역서 등) 2. 프리랜서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3. 신분증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5.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6.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개인택시기사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 상 자 현 황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날		
	자동차등록번호				
	전화(핸드폰)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타 사업 신청여부		☐ 미신청 ☐ 소상공인형 ☐ 특고직 등 ☐ 화물자동차형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개인택시조합에서 일괄로 취합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 청 인	신청인				
	주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택시기사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공 통	1. 신분증(사본)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허가증(사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1부
	위임 시	1. 위임장 2.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별지 제5호서식] 법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법인택시기사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 상 자 현 황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성별)		(남 / 여)	
	법인회사 관련		(법인명)		(법인대표자명)	
			(법인주소)			
			(대상자 입사 연·월·일)			
	전화(핸드폰)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타 사업 신청여부		☐ 미신청 ☐ 특고직 등	☐ 소상공인형 ☐ 화물자동차형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조합에서 일괄로 취합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 청 인	신청자					
	주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택시기사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공 통	1. 신분증(사본) 2.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1부
	위임 시	1. 위임장 2.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 상 자 현 황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운송업체 관련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주소)			
			(대상자 입사 연·월·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등록시스템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전화(핸드폰)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타 사업 신청여부		☐ 미신청 ☐ 특고직 등		☐ 소상공인형 ☐ 화물자동차형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본인이 속한 운송업체에서 일괄로 취합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 청 인	신청자					
	주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파주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공 통	1. 신분증(사본) 2. 파주시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위임 시	1. 위임장 2.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별지 제7호서식]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 상 자 현 황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운송업체 관련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주소)			
			(대상자 입사 연·월·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등록시스템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전화(핸드폰)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타 사업 신청여부		☐ 미신청 ☐ 소상공인형 ☐ 특고직 등 ☐ 화물자동차형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본인이 속한 운송업체에서 일괄로 취합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 청 인	신청자					
	주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파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공 통	1. 신분증(사본) 2. 파주시 전세버스 운송업체 운수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1부
	위임 시	1. 위임장 2.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파주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버스운수종사자 · 택시종사자)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u>주민등록번호</u> ,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u>보유기간(5년)</u> 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파주시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성명	김진홍(시내버스), 박재훈(택시)
전화	940-5761, 940-5291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종교시설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시설 현 황	종교시설명		운영자	
	고유번호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설립년월일		사업개시일	
	시설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도수	명		
신청 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계좌번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종교시설 운영자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고유번호증 혹은 종단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1부 3.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휴대전화			
	주소			
피위임자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기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파주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u>주민등록번호</u> ,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 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 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u>보유기간(5년)</u> 이 종 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 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 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파주시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성 명	김종현
전 화	940-4523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
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버스운수종사자·택시종사자)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u>주민등록번호</u> ,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 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 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u>보유기간(5년)</u> 이 종 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 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 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파주시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성 명	김진홍(시내버스), 박재훈(택시)
전 화	940-5761, 940-5291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
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u>주민등록번호</u> ,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 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 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u>보유기간(5년)</u> 이 종 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 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 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파주시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성 명	최영진
전 화	940-5832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①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②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③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

(서명 / 인)

파주시장 귀하

이의 신청서

※ 지급 불가 대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신청인	성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기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사유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 첨부서류 :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파주시장 귀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의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상기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에게 전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2년 월 일

파주시장 귀하